

#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7.

발의자 : 이명수 · 유민봉 · 윤한홍  
경대수 · 함진규 · 김성원  
이정현 · 김재원 · 김명연  
최연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6조에서 “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·개발하고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,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, 특정지역 개발계획,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,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지역종합개발지구(종전

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)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.”고 규정하였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”를 “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”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”를 “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